

문화콘텐츠기업 융·복합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

신용보증기금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융·복합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융·복합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콘텐츠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 원칙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
제3조(업무협력의 범위) 양 기관은 관련 법령 및 내규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.

1.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융·복합 금융지원 확대
2. 콘텐츠 가치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
3.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산업분석 등 정보 제공
4.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, 투자, 보험, 창업교육, 컨설팅, 잡매칭 등 지원
5. 기타 제1조의 목적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

제4조(협약의 실행) 상기 제3조 협력사업의 지원대상 및 세부 실행절차는 양 기관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

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당사자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에 의해 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의 내용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서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,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9월 18일



이 사 장 황 룩

원 장 직무대행 강 만 석

代 黃 魯 黃

강 만 석